

구미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2. 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주민감사 청구요건이 하향됨에 따라 위임
조례인 「구미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」의 주민감사청구 연령 및
주민 수 개정이 필요

2. 주요내용

가. 주민감사청구 주민 연령 변경 (안 제2조)

· 당초 : 20세 이상 → 변경 : 18세 이상

나. 주민감사청구 주민 수 변경 (안 제2조)

· 당초 : 190명 이상 → 변경 : 150명 이상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20세”를 “18세”로, “190명”을 “150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감사청구 주민수) 구미시와 구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 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<u>20세</u> 이상 주민의 수는 <u>19</u> <u>0명</u> 이상으로 한다.	제2조(감사청구 주민수) ----- ----- ----- ----- --- <u>18세</u> ----- <u>150</u> <u>명</u> -----.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1조(주민의 감사 청구) ①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「공직선거법」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“18세 이상의 주민”이라 한다)은 시·도는 300명,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, 그 밖의 시·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·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·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.

소 관 부 서		감사담당관
입 안 자	과 장	김 영 철
	담 당	정 성 자
	담 당 자	김 원 대 (480-6062)